

은행은 을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 채 보 증 약 정 서

수 입 인 지		20	년	월	일
------------	--	----	---	---	---

인감대조			(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을)	(인)
			주 소	

위 갑과 을 사이에 을이 20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사채(이하 “사채” 라 합니다)에 대하여 갑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을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조 보증의 부탁과 승낙**

- ① 을은 갑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사채지급보증 총액은 금 \_\_\_\_\_ 원으로 합니다.
  - 1. 사 채 원 금 : 금 \_\_\_\_\_ 원
  - 2. 사채이자총액 : 금 \_\_\_\_\_ 원
- ②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그 후 동조 동호에 의하여 금리연동 사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이와 다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 ·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사채에 대하여 갑이 보증하는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3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이행청구 없으면 갑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 ① 갑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료의 을은 연 \_\_\_\_\_ %로 하고 을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② 이자후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일단위로 계산하되 변경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증료 지급기일에 정산하고, 마지막 보증료 지급기간 중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자선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금액에 터 잡아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과 보증료 지급기일이 다를 때에는 이자지급기일에 증감된 이자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

갑은 제9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0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 이행 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 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을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보증 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제12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 ① 갑이 제11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을은 곧 갑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 ② 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13조 사전구상

갑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니다.

###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① 갑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 외에 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을이 지기로 합니다.

### 제15조 통지사항

을은 약정상의 사채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6조 계약의 실효

을이 이 약정일부터 60일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별도 조치(각종 통지 포함) 없이도 자동으로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17조 약정서의 열람·등사

갑과 을은 을의 주주·채권자 또는 사채용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8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19조 약정의 변경

- ① 갑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20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 ① 을이 당해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등록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을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 ④ 을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합니다.

### 제21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

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 채무자 본인(을)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을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갑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을은 이 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비율	%	%	%	%	%
( )비율	%	%	%	%	%

-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을은 이 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갑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갑과 을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3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을은 갑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갑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을은 갑이 을에 대한 신용평가지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갑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 제24조 진술 및 보장, 사전구상채무의 발생 등

- ① 을은 이 약정체결일, 보증개시일 및 각 사채 원리금지급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을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을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을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을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을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지급은 (가)을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을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을의 재정상황 또는 을의 이 약정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을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을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을은 각 거래실행일에 을 및 을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을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
1. 을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을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을이 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을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갑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을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을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5조 기타특약사항

을 :

(인)

--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성명 :	(인)
2. 위 약관과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성명 :	(인)
상 답 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